



도민이 중심  
신뢰받는 의회

제42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  
2024. 10. 11.(금) 10:00

# 검 토 보 고 서

충청북도교육청 당뇨병 학생 지원 조례안

교 육 위 원 회  
수 석 전 문 위 원

# 검 토 보 고 서

1. 발 의 자: 유상용 의원 등 7인

2.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

- 발의일자: 2024년 10월 2일
- 회부일자: 2024년 10월 2일

3. 제안이유

- 지난 1월 충남 태안군에 당뇨병을 앓고 있는 학생 일가족이 경제적 부담 등을 이유로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이 발생하였고, 이를 계기로 당뇨병 학생에 대한 관심과 치료 및 관리를 위한 지원 필요성이 대두됨
- 교육부의 '전국 초·중·고 소아당뇨 진단 학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당뇨병을 앓고 있는 학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2021년 3,111명 → 2022년 3,655명 → 2023년 3,855명), 우리 충청도 같은 맥락에서 소아 당뇨병 학생이 '2021년 97명 → 2022년 117명 → 2023년 142명'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임
- 이에 본 조례안은 충청북도 내 학교에서 당뇨병을 앓고 있는 학생의 건강관리 및 치료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당뇨병 학생의 학습권과 건강권 보장에 기여하고자 함

#### 4.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안 제2조)
- 교육감 및 학교장의 책무(안 제3조)
- 지원계획 수립 및 지원사업(안 제4조~안 제5조)
- 지원 범위·신청·방법(안 제6조)
- 실태조사(안 제7조)
- 사무위탁(안 제8조)
- 협력체계 구축(안 제9조)

#### 5. 검토의견

##### 가. 조례 개정 이유

- 당뇨병은 몸속 혈당조절 호르몬인 인슐린이 분비되지 않거나 분비량 부족, 인슐린 작용의 저하 등으로 혈당이 일정하게 유지되지 않아 정상적인 기능이 이루어지지 않는 대사 질환으로 발생 원인과 기전에 따라 제1형 당뇨병과 제2형 당뇨병으로 구분하며 그 주요 특징은 아래 표와 같음

당뇨병의 유형별 구분

	제1유형 당뇨병	제2유형 당뇨병
원인	자가면역 등으로 췌장 베타세포 파괴에 의한 인슐린 결핍분비에 장애 발생	인슐린 분비 및 작용의 결함으로 발생
발생연령	어린이나 20세 미만의 청소년기에 발생	40세 이후 발생
발병양상	갑자기 나타남	서서히 나타남
인슐린 분비	완전 결핍	감소되었거나 비교적 정상
치료	매일 인슐린 주사 치료	식사요법, 운동조절 후 치료되지 않으면 약물치료
사용약물	인슐린, 글루카곤	경구용 혈당강하제, 인슐린, 글루카곤

출처: 교육부·보건복지부·대한소아내분비학회·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재편집

- 아동·청소년의 경우 제1형 당뇨병이 대표적인 유형이지만 최근에는 제2형 당뇨병 발생이 청소년기 전체 당뇨병의 2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발병 빈도가 증가<sup>1)</sup>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아동·청소년의 비만과 과체중 관리를 위한 식습관 교육과 운동 지도를 통한 제2형 당뇨병 예방과 건강관리에 대한 관심과 경각심도 커지고 있는 상태임
- 당뇨병은 실질적인 완치를 기대하기 어려운 만성질환이기 때문에 일평생 지속적인 관리와 치료가 필요하며 특히, 제1형 당뇨의 경우 혈당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혈당 쇼크와 함께 생명이 위태롭게 될 수 있음
- 이 같은 특성상 당뇨병을 앓고 있는 학생은 물론이고 학부모 모두 심리·정서적 어려움과 경제적 부담이 큰 상태임
- 올해 초(2023. 1. 9.) 충남 태안군에서 제1형 당뇨병을 앓고 있는 학생 일가족이 경제적 부담 등을 이유로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건이 발생하였고, 이를 계기로 당뇨병 환자에 대한 인식 재고와 정부와 지자체 중심의 지원 필요성이 재인식되고 있음
-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초·중·고 제1형 소아당뇨를 앓고 있는 학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2021년 3,111명 → 2022년 3,655명 → 2023년 3,855명), 우리 충북도 최근 3년간 제1형 당뇨병 학생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제2형 당뇨병 학생도 129명으로 파악되고 있어(2024. 9. 기준) 학교 교육활동 중 소아당뇨 학생 건강 관리 및 치료 관련 지원 및 관리체계 마련이 요구되고 있음

---

1) 당뇨병 학생 지원 가이드라인 자료(교육부, 보건복지부, 대한소아내분비학회)

충청북도교육청 제1형 당뇨병 학생 현황

(단위: 명)

2021년				2022년				2023년				비고
초	중	고	계	초	중	고	계	초	중	고	계	
21	32	45	98	32	44	41	117	46	47	49	142	

출처: 충청북도교육청 체육건강안전과 보건교육센터

- 이 같은 측면에서, 본 조례안은 충청북도 내 학교에서 당뇨 질환을 앓고 있는 학생의 건강관리와 치료를 실효성 있게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학생들이 안심하고 안전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생의 학습권과 건강권 보장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취지와 필요성이 인정됨

나. 주요 내용

- 본 조례안은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조례안의 목적, 정의, 교육감과 학교장의 책무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4조부터 제6조에는 지원계획과 지원사업 및 지원 신청·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과 안 제8조와 안 제9조에 사무위탁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총 10개 조항의 본칙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조문별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안 제1조에는 당뇨병 학생에게 필요한 지원을 통하여 당뇨병 학생의 학습권과 건강권 보장에 기여함을 본 조례의 목적으로 명시하여 본 조례 제정의 취지와 목적을 함축적으로 담고 있는 것으로 사료됨
- 안 제2조는 ‘학교’와 ‘당뇨병 학생’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여 본 조례에 따른 당뇨병 학생의 지원 대상 및 지원 범위를 충청북도 내 유·초·중·고, 특수 및 각종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중 당뇨병을 진단받은 학생임을 명확히 한 것으로 사료됨

○ 안 제3조에는 당뇨병 학생의 학습권과 건강권 보장을 위한 교육감 및 학교장의 책무 사항을 규정함.

- 교육감은 충청북도 내 모든 학생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교육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총괄해야 할 의무가 있는 수장으로서 건강상 특별한 보호와 관리를 필요로 하는 당뇨병 학생이 학교에서 안심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당뇨병 학생의 건강관리와 치료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시행해야 할 역할과 책임이 있음을 명시하고 있고,

- 학교장 또한 학생들이 하루의 많은 시간을 보내며 생활하고 있는 학교운영의 총책임자로서 학교생활 중에 당뇨병 학생에게 필요한 건강관리와 응급상황 대처를 위한 지원사업을 실질적이고 실효성 있게 추진해 나갈 책임과 의무가 있음을 명확히 규정한 것으로 본 조항의 필요성과 조문 내용의 타당성이 인정됨

○ 안 제4조에는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규정함.

- 본 조항은 충청북도교육청의 당뇨병 학생 지원 정책 방향과 목표를 설정하고 당뇨병 학생 맞춤형 지원과 보호·관리체계 구축 방안 마련 및 필요한 예산확보, 실태조사와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함으로써, 당뇨병 학생 지원 정책과 세부 사업추진이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시행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판단됨

○ 안 제5조는 당뇨병 학생을 위한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본 조항은 당뇨병 학생 의료비 및 의료기기 지원, 인슐린 투약 관련 지원, 안전한 치료·관리 환경 조성, 학생·학부모 대상 상담 및 정보제공, 당뇨병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홍보 등과 같은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당뇨병 학생이 처한 특성에 따라 필요한 지원 사항들을 다양하게 반영함으로써 학생 맞춤형 적절한 지원이 학교현장에서 실질적이고 실효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 타당한 규정이라 사료됨

- 특히, 의료비 및 의료기기 지원사업은 평생 적절한 혈당 관리를 위한 혈당 체크와 인슐린 투약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의료비 일부(비용추계: 1인당 30만원)와 연속혈당측정기 및 인슐린자동주입기, 연속혈당센서 등을 지원함으로써 당뇨병 학생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학교생활 중에 혈당 확인이나 인슐린 투약이 수시로 필요한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안정된 인슐린 투약을 위한 환경 조성 사업 또한 그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됨

○ 안 제6조는 당뇨병 학생의 의료비 지원 범위와 지원 신청 및 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을 「충청북도교육청 난치병 학생 지원 조례」를 준용하도록 규정하였음.

- 당뇨병 환자 중 취장에서 인슐린이 분비되지 않아 혈당조절이 안돼 평생 인슐린을 투약하며 엄격한 혈당 관리를 하지 않으면 저혈당이나 고혈당 쇼크 및 합병증 등으로 생명이 위협해질 수 있는 제1형 당뇨병은 법률상 「심뇌혈관질환법」의 관리 대상으로 되어있어 난치성 질환으로 인정되지 않고 있음
- 그러나 대한당뇨협학회 등 의학계와 여러 당뇨병 환자 단체 및 관련 기관에서는 제1형 당뇨병 환자를 희귀질환 대상으로 하고 장애로 인정하여 제도적 지원을 받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으며, 국회에서도 「희귀질환관리법」,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법안 발의가 이어지는 등 제1형 당뇨병의 난치성 질환 인정 필요성과 지원을 확대

하는 방안 마련이 지속적으로 시도되고 있음

- 따라서 이와 같은 맥락에서 당뇨병을 앓고 있는 학생에 대한 의료비 지원 범위와 의료비 지급 방법, 의료비 지원 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충청북도교육청 난치병 학생 지원 조례」에 준용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본 조항은 타당하다 사료됨

- 다만, 본 조례안은 당뇨병 학생 의료비 지원에 관한 심의를 “충청북도교육청 난치병학생지원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대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세부 추진 사항에 소아·청소년 당뇨병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이 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도록 하여 전문성이 확보된 당뇨병 학생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안 제7조는 당뇨병 학생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였음

- 본 조항은 현행 초중고등학교 대상으로 실시하던 당뇨병 학생 실태조사에 유치원을 포함시켜 당뇨병 학생에 대한 조기 발견과 학생별 당뇨병 주요 특징 파악 등 당뇨병 학생에 대한 포괄적인 실태 파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당뇨병 학생을 위한 세부적인 지원 사업과 필요한 예산확보 등이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사료됨

○ 안 제8조에는 제5조의 지원사업과 제7조의 실태조사 위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제9조에는 당뇨병 학생 지원과 관련된 각종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 현재 충북 도내 학교의 부족한 보건교사 및 보건 인력 배치 상황<sup>1)</sup>

---

1) 충북 보내 학교의 보건교사 배치율은 기간제를 포함한 보건교사 배치율은 83%이며, 특히, 보건교사를 2명 이상 배치해야 하는 36학급 이상 학교는 37곳 중 20곳에 만 배치되어 있어 배치율이 54.1%로 전국에서 배치율이 3번째로 낮은 상태임.(교육부가 2024년도 국정감사에 제출한 자료)

을 고려해 볼 때 당뇨병 학생에 관한 정확한 실태조사나 당뇨병 특성에 따른 실효성 있는 맞춤형 지원 및 응급상황 발생 시 적절한 대처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학교 차원의 지원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 있어 사무위탁에 관한 사항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따라서 당뇨병과 관련된 전문성이 확보된 기관들과 연계하여 지원할 도내 외부 전문 유관기관 및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필요성이 인정되며, 도내의 협력 기관 개발과 업무협약 등을 통하여 실질적이고 내실 있는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을 위한 노력이 요구됨

#### 다. 종합의견

- 본 조례안은 소아 청소년의 당뇨병 환자가 증가함에 따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당뇨병 예방과 관리, 치료 지원 필요성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고, 이에 따라 정부와 지방자치가 관계 부처와 의료단체 가는 정책을 추진<sup>1)</sup>하고 있는 현 기조간에 당뇨병 환자 지원 방안을 다각적으로 논의하며 지원을 확대해 나에 맞춰, 충청북도교육청이 당뇨병 학생의 학습권과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당뇨병 학생의 건강관리와 치료 지원 등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 것으로 조례 제정의 취지와 필요성이 인정되며,
- 「법령 입안 및 심사기준」 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에 비추어 볼 때, 조문 체계와 개정 주요 내용이 법령에 위배 되는 사항이 없고, 집행부 담당 부서와의 협의 및 조례안 예고 등의 입법절차와 방법을 준수하여 전체적으로 타당한 조례 제정이라 판단됨

---

<sup>1)</sup> 제3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소아·청소년 1형 당뇨 환자 정밀 기기 구입 부담 1/10 수준으로 완화. (2023. 12. 28.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정부는 소아당뇨 관리 기기 구입 부담 대폭 완화 및 기기 사용 교육 기회 확대를 조속히 시행. (2024. 1. 12.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 다만, 당뇨병 학생의 의료비 지원 범위와 의료비 지급 방법, 의료비 지원 신청 등에 관한 사항이 「충청북도교육청 난치병 학생 지원 조례」에 준용하여 추진해야 하는 만큼, 당뇨병 학생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되, 현재 도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난치병 학생에 대한 지원과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지 않도록 지원 예산 수립과 지급에 관한 세심한 검토와 체계적인 지급 방안 마련이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